

선	기관의 장
람	



제 566 호

2004년 3월 26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6호(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제727호(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 6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4호(국유재산대부입찰공고)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8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인천논현2지구,9차-11차)) ...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9호(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인천논현2지구,21차)) 3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00호(분묘개장공고) 6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01호(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6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02호(가로기계양관리의위탁재공고)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07호(재결신청서열람공고(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2차>)) ...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08호(입찰공고(전자입찰)<간석동271-7번지외6개소하수도정비공사>) 6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11호(입찰공고(전자입찰)<만수3택지일원하수도준설공사>) 6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13호(공사전자입찰공고(소래포구조형물(야립빌보드)설치공사)) 7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14호(2004년도봄철가축전염병예방접종실시공고) 7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217호(전문건설업영업정지공시송달) 76

남동구보건소공고

-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공고제2004-4호(한방의약품구매전자입찰공고) 78

회								
람								

조 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조례중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6 호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남동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반”을 “통·반”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위·해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의 후단에 단
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임기
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한 동 명칭변
경 및 동의 통·폐합시 또는 통·반조정시 동일인의 통장재위촉의 경우
에는 연임으로 본다.

동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통·반 관할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반장이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고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5. 3개월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④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거 해촉 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하여 재 위촉할 수 없으며, 그 후임대상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전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사유

- 통·반장 위·해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은 물론, 통·반장 위·해촉시 연임의 기준 및 임기산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통·반장 위·해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동명칭 변경 및 동의 통·폐합시 또는 통·반 조정시 동일인의 통장 재위촉의 경우 연임으로 본다. (안 제5조2항 제3호)
- 동장은 통·반장이 당해 통·반구역 외로 전출한 경우,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직무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안 제5조 제3항)
- 임기만료 및 제3항에 의한 해촉 후 동일인 및 동일세대원에 대하여는 재위촉할 수 없으며,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반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안 제5조 제4항)
-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전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과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남동구 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4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727 호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 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인천광역시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1회용품의 사용억제·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시·구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의 촉진

제6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 수집대상 품목으로 정한다.

1. 종 이 류
2. 병 류
3. 캔 류(주석, 알미늄 구분)
4. 금 속 류
5. 플라스틱류
6. 의 류
7. 농업용 폐비닐
8.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이행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실시
3. 기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유재산 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3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기준) 구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구청장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부기간이 도과하면 감경(50%)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12조(의견제출)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신고포상금의 범위)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커피 등을 무상제공 하는 행위포함)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

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8조(신고자) ①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9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 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정대상자용)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구청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및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제14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되어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규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8.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재

판을 받게 되는 경우

②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테료부과 및 포상금지급 기준

(단위 : 만원)

과 테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자(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법 제9조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과 대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활구조개선타당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8조 또는 제29조제2항)	100	10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 제3항)	50	70	100	

[별지 제1호 서식]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받 음 :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내용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

6. 의 건 제 출

기 관 명

부 서 명

주 소

기 한

년

월

일까지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앞면>

《 의 건 제 출 사 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구술·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뒷면 >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문서번호 : (200 . . .)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결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받 음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
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
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
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반 음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감경대상자용)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
진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금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을 받게 됩니다.

붙임 : 과태료 납부 통지서 1부.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
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 경) 통 지 서

주 소 :

성 명 :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 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
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
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발 신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와 관련입니다.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붙 임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illegible]

※ 서식은 A4형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10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 락 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절 --- 취 --- 선 ---

신 고 접 수 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

위 반 행 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illegible]

5) 서식은 A4형으로 작성

- 28 -

[별지 제13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연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시 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일반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새마을금고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수납인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 인천광역시
O C R

영수필통지서 (구정보관용)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기내	까지
	원

납기후	까지
	원

(아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 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수납인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납부자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주 소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정액액(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 세무서함

● 인천광역시
O C R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 부 자 :

부과대상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정액액(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 인천광역시
O C R

영수필통지서 (구청보관용)

세 외 수 입

남동구

200

납부번호	기관	검	회계	과목	년도	월	구분	실과	고지번호	검

납기내	까지
	원

납기후	까지
	원

(아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납부기한	까지	까지
세 목	납 기 내	납 기 후
내역	※ 1회용종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정액액(50%)을 받을수 없으니 착오없이기 바랍니다	

부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수납인

□ 개정사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653호, 2002.2.24)의 개정·시행(2003.7.1)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제232호, 2003.7.28)의 개정,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폐정 67511-949호, 2003.9.3)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안 제10조)
- “주민신고 포상금 제도”의 도입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16조)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04-194호

국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대부재산의 표시)

구분(용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입찰예정가격 (연간대부료)	비고
남동뉴시터	남동구 남촌동 510-8	유지	32,975	121,348,000원	국(재정경제부)

2.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기간 : 2004.03.29(09:00) ~ 03.30(18:00)
-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4.03.31(14:00)
- ※ 장소 : 남동구청 5층 자치행정과 사무실(필요시 5층 상설감사장)
- 계약조건은 자치행정과(재산관리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필한자

5. 제출서류

가. 입찰등록시

- ① 입찰참가 신청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입찰보증금 납입영수증 및 입찰보증금 환불용 예금통장사본 1부.

나. 입찰(개찰)시

- ①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② 대리입찰의 경우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 ③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50이상의 현금 또는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우리구에서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법률시행령제37조에의한 보증서를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본 구에 귀속됩니다.

남동구 공고 제2004-194호

7. 낙찰자의 결정 : 2인이상 유효한 입찰자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며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8. 낙찰의 취소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는 낙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현장입찰(상시·우편입찰 불허)로 합니다.
 - 나. 낙찰자의 경우 국유재산 대부기간은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고
대부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다. 입찰참가 신청서의 대부용도가 불건전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등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부적절하다고 우리구에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신청을
제한합니다.(국유재산법 제24조)
 - 라.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답사 및 각종 공부는 개별 열람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치행정과(032-453-2232)로 문의 바랍니다.

2004년 3 월 22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 2004- 198 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9차~1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2004. 2. 17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송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들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4. 3.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2. 사업의종류 :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 2지구)
3. 재결일자 : 2004. 2. 17
4. 공고기간 : 2004. 3. 22 - 4. 6
5. 재결서 정본 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2662
6. 공시송달대상
 - 정임섭 : 인천 연수구 옥련동 럭키송도아파트 113동 904호 (수취인 미거주) 9차
 - 오순자 : 인천 연수구 옥련동 315-4 대창연립 101호 (수취인 부재) 10차
 - 박명수 : 인천 연수구 옥련동 315-4 대창연립 101호 (수취인 부재) 10차
 - 윤여완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243 동성아파트 101/1004 (수취인 부재) 11차
 - 이정희 : 인천 남동구 논현동 298 (이사) 11차
 - 강운신 : 인천 연수구 선학동 353 아주아파트 103-1110 (이사) 11차
7. 기타

재결서 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199 호

수용재결신청열람공고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인천논현2지구, 2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따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계가 있으신 분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3. 22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인천논현2지구택지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기업자) :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
3.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일원
4. 사업내역 : 면 적 2,543,054.9㎡
사업기간 2000. 3. 31 ~ 2006. 12. 31
5. 열람기간 : 2004. 3. 22 ~ 2004. 4. 6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 453-2662)
7. 의견서 제출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남동구청도시계획과
8. 수용대상 내역 : “별첨” (기업자제시액조서)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453-26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토지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단위: 면적 (㎡), 금액(원)													
지번 (양조지번)	용도지역		평가면적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주소		권리구분		관계인주소
	공부	실제	지분	종아	대일예셋	평가액	단가	금액	소유자주소	(상거주지)	권리구분	관계인주소	
논현동 462-3	지번북지지번 대	537.00 (199/597)	70,526.000	70,526.000	70,526.000	394,000	70,526.000	394,000	성승훈 인천 남동구 송의동 129-83 대일아파트 3/401 (종남 서산시 대신읍 대신리 202 (대리점)		권리구분	관계인주소	
	도	60.00 (199/597)	2,620.000	2,620.000	2,620.000	131,000	2,620.000	131,000	2,620.000				
[소계]													
논현동 신62-1	지번북지지번 합	4,264.00 (230/4264)	134,760.000	134,760.000	134,480,000	534,000	136,620,000	534,000	성승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62-1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62-1(4/3))		합	국(남인천해양부) 인천 남동구 구월1동 남인천해양부	
[소계]													
논현동 신62-1	지번북지지번 합	4,264.00 (579.6/4264)	339,645,600	348,919,200		594,000	344,282,400	594,000	이영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249-15 (서울 강서구 동문동 694 (40/4) 대일아파트 102-704)				
[소계]													
논현동 신69-17	지번북지지번 합	82.00	10,988,000	11,234,000		135,500	11,111,000	135,500	최단비인대해수고정문화서용노회유지재단 서울 중동구 연지동 136-46				
[소계]													
논현동 349-10	지번북지지번 합	2,444.00	567,009,000	593,892,000		237,500	580,450,000	237,500	주식회사한진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3-5 (인천 서구 기좌동 179-78 b-301호)		간지당	주식회사한진종합건설 인천 남동구 간지동 207-6	
[소계]													
논현동 349-11	지번북지지번 합	5,579.00	1,461,698,000	1,539,804,000		269,000	1,500,751,000	269,000	국(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여원부) 서울 중동구 여의도동 94-267		간지당	국(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여원부) 서울 중동구 여의도동 94-267	

손실보상금,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illegible]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페이지 : 3 of 24
작성일 : 2004.03.03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대수나루 30년	수량 지분	평가기관별 평가액 동아	단가	사업시행자제시액 금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권리구분	관계인 주소
172 - 12	논현동 산71	대수나루 30년	2.00 주	↑	↑	↑	↑	↑	↑	↑
【소계】										
4190 - 1	논현동 292-1	동나루 15년	3.00 주	1,310,000	1,220,000	0	1,255,000 원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292-1 다세대주택(상업용) 302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번지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번지 15/2
4190 - 2		결정물 8년	2.00 주	↑	↑	↑	↑	↑	↑	↑
4190 - 3		단풍나루 12년	1.00 주	↑	↑	↑	↑	↑	↑	↑
4190 - 4		두물나루 13년	3.00 주	↑	↑	↑	↑	↑	↑	↑
4190 - 5		오리화 12년	3.00 주	↑	↑	↑	↑	↑	↑	↑
4190 - 6		장미 7년	1.00 주	↑	↑	↑	↑	↑	↑	↑
4190 - 7		솔구 15년	1.00 주	↑	↑	↑	↑	↑	↑	↑
4190 - 8		물결 7년	3.00 주	↑	↑	↑	↑	↑	↑	↑
4190 - 9		대수나루 8년	2.00 주	↑	↑	↑	↑	↑	↑	↑
4190 - 10		벚꽃 6년	2.00 주	↑	↑	↑	↑	↑	↑	↑
4190 - 11		지독나루 12년	3.00 주	↑	↑	↑	↑	↑	↑	↑
4190 - 12		배나루 8년	-5.00 주	↑	↑	↑	↑	↑	↑	↑
4190 - 13		강나루 10년	3.00 주	↑	↑	↑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소재지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이름		페이지	
(금액, 원)		지번(당초지번)				지번		동아		단가		소유자 주소 (상가주지)		관 계 인 이 름	
977 - 11	논현동 산71	지두나루 15년				1.00 주		↑		↑		김재길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			
977 - 12		배나루 7년				1.00 주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15/6)			
977 - 13		우장화 7년				11.00 주		↑		↑					
977 - 14		계나리 15년				6.00 주		↑		↑					
【소 계】															
166 - 1	논현동 산71	가옥 브릭스레트				61.20㎡		19,584,000	19,584,000	320,000	19,584,000	김정환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번지 15/2			
166 - 2		가옥 목재 편지이트				30.60㎡		703,800	765,000	24,000	734,400				
166 - 3		바닥 콘크리트(3*5)				15.00㎡		150,000	150,000	0	150,000				
166 - 4		관장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168 - 1		창고 목조 철팔피프스 압탄				21.45㎡		1,179,750	1,072,500	52,500	1,128,120				
168 - 2		가옥 철팔피프스 스테트				13.00㎡		325,000	325,000	25,000	325,000				
【소 계】															
511 - 1	논현동 411-44	가옥 브릭스레트				53.50㎡		18,725,000	18,190,000	345,000	18,457,500	김준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1-44 2/4			
511 - 2		가옥 브릭스레트				13.50㎡		4,320,000	4,320,000	320,000	4,320,000				
511 - 3		영양장 브릭스레트(전면 철무구조체)				122.25㎡		34,230,000	35,452,500	285,000	34,841,25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재산액 조사

페이지 : 6 of 24
작성일 : 2004 03 03사업지구: 인천노원(2)
(금액: 원)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지번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재산액		소유자 이 통		관계인 이 통	
				동아	대일에서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상가주지)	소유자 주소 (상가주지)	관계인 주소	관계인 주소
511 - 4	노원동 411-44	창고1 콘크리트	30.00㎡	3,300,000	3,000,000	105,000	3,150,000	405-300 노원동 411-44 2/4			
511 - 5		창고2 콘크리트	6.50㎡	715,000	650,000	105,000	682,500				
				81,451,250 원							
4202 - 1	노원동 신62-1	관정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노원동			
4202 - 2		지리지 및 현관 철재 벽 개량콘크리트	46.67㎡	1,033,340	939,400	21,000	986,370	405-647 인천 남동구 노원동 신62-1 4/2			
4202 - 3		대문 철재 합석	1.00식	280,000	250,000	0	285,000				
4202 - 4		바닥 콘크리트	30.00㎡	300,000	300,000	0	300,000				
4202 - 5		간식 옥재합석	26.40㎡	528,000	528,000	20,000	528,000				
4202 - 6		베란다 4년	2.00주	1,020,000	1,100,000	0	1,060,000				
4202 - 7		복숭아 6년	9.00주	↑	↑	↑	↑				
4202 - 8		영두나무 10년	1.00주	↑	↑	↑	↑				
4202 - 9		단풍나무 10년	3.00주	↑	↑	↑	↑				
4202 - 10		시월나무 10년	4.00주	↑	↑	↑	↑				
4202 - 11		꽃시과 10년	1.00주	↑	↑	↑	↑				
4202 - 12		밤나무 10년	1.00주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지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7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상조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지 제시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이름
			지번	종아	대일애셋	단가	금액				
4202 - 13 논현동 신62-1	개나리 근력	무공회 3년	5.60 ㎡	↑	↑	↑	↑	↑	김정규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05-847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62-1 4/2		
			1.00 주	↑	↑	↑	↑				
3,889,370 원											
4193 - 1 논현동 351-55	관정	대관 판별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관정호 405-9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351-55(4/3)			
			1.00 식	100,000	100,000	0	100,000				
4193 - 3		바닥 보도블럭	7.00 ㎡	63,000	60,000	0	61,500				
4193 - 4		복층아파트 10년	1.00 주	90,000	80,000	0	85,000				
4193 - 5		영두나루 5년	1.00 주	↑	↑	↑	↑				
4193 - 6		오기파 3년	1.00 주	↑	↑	↑	↑				
996,500 원											
225 - 1 논현동 신71	기옥 브릭스레트	바닥 콘크리트	102.92 ㎡	31,905,200	32,934,400	315,000	32,419,800	동종남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1			
			25.50 ㎡	260,000	260,000	0	260,000				
225 - 3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225 - 4		장벽대	1.00 식	50,000	50,000	0	50,000				
225 - 5		리얼라 15	2.00 주	1,900,000	1,920,000	0	1,86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학·원) 페이지: 9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구조	용건명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이름		권리구분	관계인주소	관계인주소
				수량	종이	대일매셋	단가	금액	소유자주소 (상거주지)			
225 - 20	논현동 산71	철도 15		2.00 주	↑	↑	↑	↑	문종남 46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번지 15/1			
225 - 21		연선로 13		3.00 주	↑	↑	↑	↑				
225 - 22		시월나무 10		2.00 주	↑	↑	↑	↑				
225 - 23		나팔꽃비웃힐곳 15		1.00 주	↑	↑	↑	↑				
225 - 24		나팔꽃비웃힐곳 3		2.00 주	↑	↑	↑	↑				
225 - 25		포도 3		1.00 주	↑	↑	↑	↑				
225 - 26		매실 5		1.00 주	↑	↑	↑	↑				
225 - 27		개나리		18.00 m	↑	↑	↑	↑				
225 - 28		강나무 6		3.00 주	↑	↑	↑	↑				
225 - 29		대나무		5.00 m	↑	↑	↑	↑				
[소계]											35,339,800 원	
4198 - 1	논현동 411-41	가옥 및 창고 복채 편리 이트		8.00 m ²	400,000	400,000	50,000	400,000 원/㎡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1-41 (2/4)			
4198 - 2		양장 보석		3.00 m	135,000	135,000	45,000	135,000				
4198 - 3		비덕 시멘트		21.00 m ²	210,000	210,000	0	210,000				
4198 - 4		관정		1.00 4	750,000	750,000	0	75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원: 원)페이지: 10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양호지번)	물건명: 구조 대분 목적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주소 (실거주지)		권리구분	
			지분	동이	대입예치	단가	금원		소유자 주소 (실거주지)		관계인 주소	관계인 주소
4198-5	논현동 411-41	대분 목적	1.00 석	320,000	300,000		0	310,000	405-9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1-41 (2/4)			
4198-6		포도나무 7년	1.00 주	40,000	40,000		40,000	40,000				
[소계]							1,945,000 원					
318-1	논현동 신71	가옥 브릭스레트	30.07㎡	9,321,700	9,321,700		310,000	9,321,7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 15/4			
318-2		방음벽보일러 목조스 칸트	6.30㎡	1,197,000	1,194,000		185,000	1,185,500				
318-3		한강이미주 목조스레트	7.92㎡	2,455,200	2,455,200		310,000	2,455,200				
318-4		가옥 목조스레트	3.24㎡	97,200	97,200		30,000	97,200				
318-5		건식 목재	1.44㎡	20,000	20,000		0	20,000				
[소계]							13,059,600 원					
318-1	논현동 신71	가옥 브릭스레트	74.08㎡	23,705,600	24,446,400		325,000	24,076,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4/3			
318-2		보일러실 브릭스레트	5.00㎡	375,000	400,000		77,500	387,500				
318-3		창고 및 화장실 브릭스 칸트	18.10㎡	1,520,000	1,500,000		0	1,510,000				
318-4		차양막 목재브릭스	12.24㎡	244,800	244,800		20,000	244,800				
318-5		관정	1.00 석	750,000	750,000		0	750,000				
318-6		대문	1.00 석	220,000	200,000		0	210,000				

시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노원(2)
(구역: 원)

페이지: 11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면적기반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이름	관리구분
		지목	면적		대입액	잔액	단가	금액		
318 - 7	논현동 신71	비대 콘크리트	6.75 m ²	70.000	70.000	0	70.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 71번지 14/3		
318 - 8		차양막 철파이프 잔여	17.50 m ²	525.000	525.000	30.000	525.000			
[소계]					27,775,300 원					
204 - 1	논현동 신71	가옥 벽돌스레이트	103.96 m ²	33,287,200	34,306,800	325,000	33,787,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204 - 2		가옥 벽돌스레이트	18.40 m ²	1,564,000	1,472,000	82,500	1,518,000			
204 - 3		옥대 시멘트	13.30 m ²	1,330,000	1,330,000	100,000	1,330,000			
[소계]					36,635,000 원					
58 - 1	논현동 신71	가옥 벽돌스레이트	37.84 m ²	12,108,800	12,487,200	325,000	12,298,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58 - 2		항정철강기둥 벽돌스레이트	5.88 m ²	650,000	700,000	0	675,000			
58 - 3		비대 콘크리트 (4.3*1.2)	5.16 m ²	55,000	50,000	0	52,500			
58 - 4		대문 상치	1.00 식	160,000	150,000	0	155,000			
[소계]					13,190,500 원					
4207 - 1	논현동 411-31	담장 철석	17.00 m	187,000	204,000	11,500	195,5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소계]					195,500 원					
104 - 1	논현동 신71	가옥 벽돌스레이트	43.92 m ²	14,054,400	14,493,600	325,000	14,274,0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71번지 15/5		
104 - 2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소계]					15,024,000 원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재산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학: 원)

페이지: 12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재산액		소유자 이 동		관 계 인 이 동	
			지분	동아	대입액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실거주지)				
103 - 1	논현동 신71	기옥 브릭스레트	39.54㎡	12,652,800	13,048,200	325,000	12,650,500	인천 논현동 405-300	405-300 인천 논현동 신71번지 15/3			
103 - 2		거실경로포 브릭스레트	15.90㎡	4,452,000	4,293,000	275,000	4,372,500					
103 - 3		침실대 란크리트	1.00식	50,000	50,000	0	50,000					
103 - 4		화장실 브릭스레트	7.20㎡	1,000,000	1,000,000	0	1,000,000					
【소계】							18,273,000 원					
4175 - 1	논현동 541	관정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인천 논현동 405-300	405-300 인천 논현동 신71번지 405-350 인천 논현동 541 2/3			
【소계】							750,000 원					
288 - 1	논현동 신71	기옥 브릭스레트	19.20㎡	5,852,000	6,144,000	315,000	6,048,000	인천 논현동 405-300	405-300 인천 논현동 신71 14/5			
288 - 2		부엌 브릭스레트	10.35㎡	3,208,500	3,312,000	315,000	3,260,250					
288 - 3		화장실 브릭스레트	10.35㎡	1,500,000	1,500,000	0	1,500,000					
288 - 4		침고 욕조스레트	15.05㎡	827,750	752,500	52,500	760,120					
288 - 5		기후 욕조스레트	12.00㎡	1,020,000	960,000	82,500	990,000					
【소계】							12,588,370 원					
8034 - 1	논현동 111	관정 수중대공미러	1.00식	3,200,000	3,300,000	0	3,250,000	인천 논현동 405-947	405-947 인천 논현동 111 12/3			
8035 - 1		관정 수중대공미러	1.00식	3,200,000	3,300,000	0	3,250,000					
8049 - 1		관정 수중대공미러	1.00식	3,200,000	3,300,000	0	3,25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소재지		용건영. 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이름		소유자주소 (상거주지)		권리구분		권리인주소	
시합지구: 인천논현(2)		지번(당초지번)		구분		지표		면적		단가		금액		소유자이름		소유자주소 (상거주지)		권리구분	
(금액, 원)		논현동		관정 수평대공5미터		1.00 식		3,220.000		3,300.000		0		3,250,000.00도영		405-047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12/3			
8050 - 1	111			관정 수평대공5미터		1.00 식		3,220.000		3,300.000		0		3,250,000.00도영		405-047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12/3			
8053 - 1				관정 수평대공5미터		1.00 식		1,850.000		1,900.000		0		1,875.000					
【소계】														14,875,000 원					
153 - 1	산71			기초 브릭스레트(단열포함)		51.00 m ²		16,320.000		17,340.000		330.000		16,830.000 유봉주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 15/6			
153 - 2				장포 브릭스레트(단열포함)		74.00 m ²		20,720.000		20,720.000		280.000		20,720.000					
153 - 3				기초 샷시		17.00 m ²		2,380.000		2,550.000		145.000		2,465.000					
153 - 4				화장실 브릭스레트		2.70 m ²		550.000		600.000		0		575.000					
153 - 5				복대 콘크리트		15.50 m ²		1,550.000		1,550.000		100.000		1,550.000					
153 - 6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153 - 7				바닥 콘크리트		45.00 m ²		450.000		450.000		0		450.000					
【소계】												43,340,000 원							
128 - 1	논현동 산71			기초 브릭스레트		49.00 m ²		15,680.000		16,170.000		325.000		15,825.000 오민경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번지 15/6			
128 - 2				기초 벽조스레트		10.50 m ²		577.500		525.000		52.500		551.250					
128 - 3				단상 브릭스레트(복대포함)		8.00 m ²		560.000		520.000		67.500		540.000					
【소계】												17,016,250 원							
4185 - 1	논현동 368-13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이기상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13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13(4/1)			

순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소재지		수량		영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지이름		소유지주소 (상가주지)		관계인주소	
순번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지번	지분	동아	대입에셋	단가	금액		소유지주소 (상가주지)		소유지주소 (상가주지)		관계인주소	
4185-2	논현동 368-13	가옥 복조현리이트	15.03	㎡	751,500	751,500	50,000	751,500	이강구본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13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13(4/1)		관 계 인 주 소	
4185-3		대우나무 10년	2.00	주	160,000	160,000	0	160,000							
4185-4		오동나무 12년	2.00	주	↑	↑	↑	↑							
【소계】								1,861,500 원							
37-1	논현동 신71	가옥 보석스래트	63.44	㎡	20,935,200	20,935,200	330,000	20,935,200 이상액		404-230 인천 서구 가동3동 563-2 대진빌리 8-201		404-230 인천 서구 가동3동 563-2 대진빌리 8-201			
37-2		창고 보석스래트	3.91	㎡	469,200	469,200	120,000	469,200							
37-3		창고 보석스래트 보리이	13.77	㎡	895,050	895,050	82,500	895,050							
37-4		바다 풀크리트 (2.4*10.4)	24.96	㎡	250,000	250,000	0	250,000							
【소계】								22,515,000 원							
4212-1	논현동 368-5	담장 조형식	40.00	m	1,000,000	1,000,000	25,000	1,000,000 이상액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8-5 4/2					
4212-2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750,000							
4212-3		창고 조형식담장 스투트	8.00	m	320,000	320,000	40,000	320,000							
4212-4		창고 및 보물관식 조형식담장 스투트	6.82	㎡	750,200	818,400	115,000	764,300							
4212-5		은행나무 30년	2.00	주	550,000	520,000	0	535,000							
4212-6		은행나무 6년	1.00	주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지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15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지번(양초지번)	소재지		용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지 제시액		소유자 이름		권리구분	
		지번	소재지		지번	종이	단가	금액						
4212 - 7	논현동 366-5		신시대문 일류미용사		1.00 식	150,000	150,000	0	150,000 이월구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366-5 4/2			
[소계]														
4200 - 1	논현동 신72-1		필리우 10년		27.00 수	1,500,000	1,620,000	0	1,560,000 임정빈		403-835 인천 부평구 신곡4동 134 (1/8)			
[소계]														
490 - 1	논현동 414-1		3층주관 적간외조		206.52㎡	123,912,000	128,042,400	610,000	125,877,200 조경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90 - 2			2층골프연습장 철근콘크리트		440.00㎡	220,000,000	224,400,000	505,000	222,200,000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490 - 3			1층골프연습장 철근콘크리트		950.00㎡	164,500,000	171,500,000	480,000	168,000,000					
490 - 4			1층, 2층 치안막 기사이외 피아프 할간함석		176.00㎡	10,560,000	11,440,000	62,500	11,000,000					
490 - 5			가주 창고 세화산업화장업소용, 보안관리아파트, 스포츠 센터		100.80㎡	14,112,000	15,120,000	145,000	14,616,000					
490 - 6			창고 적간외조 스텔트		3.90㎡	1,365,000	1,404,000	355,000	1,384,500					
490 - 7			지형실 철근콘크리트		53.55㎡	14,994,000	14,994,000	280,000	14,994,000					
490 - 8			식당 철근콘크리트		90.00㎡	40,500,000	41,400,000	455,000	40,950,000					
490 - 9			건사 출입		4.32㎡	66,400	66,400	20,000	66,400					
490 - 10			건사 옥재		2.25㎡	45,000	45,000	20,000	45,000					
490 - 11			3층정원		1.00식	1,500,000	1,500,000	0	1,50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페이지 : 16 of 24
작성일 : 2004.03.03사업지구: 인천보현(2)
(금액: 원)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주소 (상가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동아	대외에셋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상가주지)			
430 - 12	남현동 414-1	계단(후문)	1.00 식	1,100,000	1,200,000	0	1,150,000	조경식 405-300 인천 남동구 남현동 414-1 405-948 인천 남동구 남현동 414-1 (2/3)			
430 - 13		신철로 적벽돌 (20*0.6)	12.00㎡	158,000	144,000	12,500	150,000				
430 - 14		양장 할간합석	100.00㎡	2,000,000	2,000,000	20,000	2,000,000				
430 - 15		대문(정문) 철팔이프	1.00 식	330,000	300,000	0	315,000				
430 - 16		양장 보석(130*1.1)	143.00㎡	6,435,000	6,435,000	45,000	6,435,000				
430 - 17		안쪽 콘크리트	1.00 식	1,000,000	1,000,000	0	1,000,000				
430 - 18		바닥(철프장영) 콘크리 트(2.8*30)	84.00㎡	840,000	840,000	0	840,000				
430 - 19		대문(후문) 철팔이프	1.00 식	300,000	300,000	0	300,000				
430 - 20		계단(후문) 콘크리트	1.00 식	300,000	300,000	0	300,000				
430 - 21		바닥(주차장) 콘크리트	821.00㎡	8,210,000	8,210,000	0	8,210,000				
430 - 22		주차장치장막 천막목재 파이프	100.65㎡	2,214,300	2,013,000	21,000	2,113,650				
430 - 23		바닥(주차장) 콘크리트 (3*16.5)	49.50㎡	500,000	500,000	0	500,000				
430 - 24		바닥(철프장) 콘크리트 (20.5*40)	820.00㎡	9,800,000	9,600,000	0	9,700,000				
430 - 25		철창크자장소 적인양조	24.00㎡	6,240,000	6,720,000	270,000	6,48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지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17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양초지번)	물건명·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지 제시액		소유지 이 불		관리구분	관 계 인 주 소
			지분	동아	대입액	단가	금액	소유지 주 소 (설거주지)	소유지 주 소 (설거주지)			
490 - 26	논현동 414-1	건조대 목재그늘임	1.00 식	50,000	50,000	0	50,000 조정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90 - 27		세연대 타임콘크리트	1.00 식	200,000	200,000	0	200,000	405-9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490 - 28		관정	1.00 식	2,200,000	2,200,000	0	2,200,000					
490 - 29		주택 20년	2.00 주	22,740,000	24,810,000	0	23,775,000					
490 - 30		주택 10년	2.00 주	↑	↑	↑	↑					
490 - 31		무궁화 10년	35.00 주	↑	↑	↑	↑					
490 - 32		스트로보라지 7년	32.00 주	↑	↑	↑	↑					
490 - 33		목련 7년	1.00 주	↑	↑	↑	↑					
490 - 34		장미 7년	6.00 주	↑	↑	↑	↑					
490 - 35		속백 7년	3.00 주	↑	↑	↑	↑					
490 - 36		지동 10년	6.00 주	↑	↑	↑	↑					
490 - 37		벚 10년	2.00 주	↑	↑	↑	↑					
490 - 38		사철 15년	31.00 주	↑	↑	↑	↑					
490 - 39		포리리니스 20년	18.00 주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역: 원)

페이지 : 18 of 24
작성일 : 2004.03.03

순번	소재지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이득		관리구분	
	지번(당초지번)	지번(당초지번)			동아	대입액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리구분	관 계 인 이득
430 - 40	논현동 414-1	시교 10년	4.00 주	↑	↑	↑	↑	↑	조경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05-9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	↑	↑
430 - 41		노티나우 7년	4.00 주	↑	↑	↑	↑	↑				
430 - 42		이해나우 10년	1.00 주	↑	↑	↑	↑	↑				
430 - 43		노티나우 15년	33.00 주	↑	↑	↑	↑	↑				
430 - 44		오동 15년	1.00 주	↑	↑	↑	↑	↑				
430 - 45		은평 15년	14.00 주	↑	↑	↑	↑	↑				
430 - 46		신우대 20년	41.00 m	↑	↑	↑	↑	↑				
430 - 47		취봉 10년	45.00 m	↑	↑	↑	↑	↑				
430 - 48		영남 20년	3.00 주	↑	↑	↑	↑	↑				
430 - 49		경미 15년	25.00 주	↑	↑	↑	↑	↑				
430 - 50		화양북 10년	9.00 m	↑	↑	↑	↑	↑				
430 - 51		황북 10년	3.00 m	↑	↑	↑	↑	↑				
430 - 52		성조나우 30년	1.00 주	↑	↑	↑	↑	↑				
430 - 53		영자 7년	5.00 주	↑	↑	↑	↑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19 of 24
작성일: 2004.03.04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이름		관계인 주소
			지분	동아	대입예산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실거주지)			
490 - 54	논현동 414-1	배너우 15년	49.00 주		↑			조경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05-9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490 - 55		봉니우 15년	1.00 주		↑						
490 - 56		목련 10년	9.00 주		↑						
490 - 57		기아스캐왕니우 25년	4.00 주		↑						
490 - 58		주목 20년	1.00 주		↑						
490 - 59		철복 15년	4.00 m		↑						
490 - 60		철복 15년	9.00 m		↑						
490 - 61		철복 15년	4.00 m		↑						
490 - 62		취흥니우 15년	5.00 m		↑						
490 - 63		경미 15년	15.00 m		↑						
490 - 64		개나리 15년	94.00 m		↑						
490 - 65		중국단풍 10년	3.00 주		↑						
490 - 66		장단풍 7년	15.00 주		↑						
490 - 67		회양목 15년	223.00 주		↑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시임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매이지: 20 of 24 작성일: 2004.03.03				권리근거		관계인 주소	
순번	소재지 지번(양호지번)	물건명·구조	수량 지분	동아	평가기관별 평가액		시임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계인 주소
					대입이전	단가	금액	금액			
490 - 69	논현동 414-1	후박 25년	10.00 주	↑	↑	↑	↑	↑	조영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90 - 69		삼구 10년	2.00 주	↑	↑	↑	↑	↑	405-6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490 - 70		황복 10년	25.00 m	↑	↑	↑	↑	↑			
490 - 71		두름 7년	13.00 주	↑	↑	↑	↑	↑			
490 - 72		대추 10년	6.00 주	↑	↑	↑	↑	↑			
490 - 73		복숭아 20년	1.00 주	↑	↑	↑	↑	↑			
490 - 74		적단풍 7년	3.00 주	↑	↑	↑	↑	↑			
490 - 75		평나무 7년	1.00 주	↑	↑	↑	↑	↑			
490 - 76		평나무 10년	2.00 주	↑	↑	↑	↑	↑			
490 - 77		속편 50년	1.00 주	↑	↑	↑	↑	↑			
490 - 78		평나무 7년	1.00 주	↑	↑	↑	↑	↑			
490 - 79		대추 20년	1.00 주	↑	↑	↑	↑	↑			
490 - 80		황단풍 10년	1.00 주	↑	↑	↑	↑	↑			
490 - 81		오동 5년	4.00 주	↑	↑	↑	↑	↑			

순환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학: 원)		페이지: 21 of 24 작성일: 2004.03.03		권리구분		관 계 인 이 례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지분 동이 대입여부	사업시행자제시액 단가 금액	소유자 이 례 소 남 시 주 소 (실가주식)	관 계 인 이 례
480 - 82	논현동 414-1	기아스캐형나루 20년	14.00 주	↑	↑	조경석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4-1 (2/3)	
480 - 83		오과 10년	1.00 주	↑	↑		
480 - 84		벗나루 20년	24.00 주	↑	↑		
480 - 85		포도나무	4.00 주	↑	↑		
【소계】				868,471,750 원			
154 - 1	논현동 415-71	기후 브릭스레트(타일포 함)	35.19㎡	11,812,700	11,964,600	335,000 11,788,650 조준지	
154 - 2		정표 브릭스레트	19.89㎡	5,569,200	5,569,200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기반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 신기반지(15/6)	
154 - 3		기후 샌드위치판넬식시	4.50㎡	630,000	675,000	145,000 652,500	
154 - 4		관정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154 - 5		바닥 콘크리트 2.1×1.5	3.15㎡	40,000	40,000	0 40,000	
154 - 6		축대 콘크리트	5.10㎡	510,000	510,000	100,000 510,000	
【소계】				19,310,350 원			
974 - 1	논현동 415-64	창고 브릭스레트	157.50㎡	31,500,000	31,500,000	200,000 31,500,000 최관보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64	
【소계】				31,500,000 원			
975 - 1	논현동 415-65	키세티 브릭스레트	25.20㎡	5,544,000	5,282,000	215,000 5,419,000 최관보 405-848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65 14/1 405-2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1092-4 씨티빌-402	
975 - 2		기후 스텔트	25.20㎡	3,528,000	3,780,000	145,000 3,654,000	
【소계】				9,072,000 원			

시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남동지구: 인천논현(2)
(공해: 원)페이지: 22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주소		소유자 이름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지번	동아	대입액	평가액	단가	금액								
173 - 1	논현동 산71	기옥 브릭스레트	82.80㎡	28,498,000	27,324,000		325,000	26,910,000 회생용								
173 - 2		창고11 브릭스레트	6.90㎡	828,000	828,000		120,000	828,000								
173 - 3		기초 벽조블라이트	10.35㎡	569,250	517,500		52,500	543,370								
173 - 4		관정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173 - 5		바닥 콘크리트 (4.1*10.1)	41.41㎡	420,000	420,000		0	420,000								
173 - 6		양장(목도양) 브릭	16.00㎡	640,000	560,000		37,500	600,000								
173 - 7		오기파 19번	2.00주	220,000	240,000		0	230,000								
173 - 8		철책 13번	1.00주				1									
173 - 9		벽화 10번	8.00주				1									
281 - 1	논현동 산71	기옥 브릭스레트	84.38㎡	28,689,200	27,845,400		335,000	28,281,300 회생용								
281 - 2		기초 벽조블라이트	28.84㎡	1,009,400	1,009,400		35,000	1,009,400								
281 - 3		창고11 브릭스레트	8.32㎡	832,000	832,000		100,000	832,000								
281 - 4		창고22 브릭스레트	3.75㎡	208,250	225,000		57,500	215,620								
281 - 5		대문 설치	1.00식	300,000	300,000*		0	30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자제시액 조서

사업지구: 인천본천(2)
(금액: 원)

페이지: 23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당초지번)	용건명, 구조	평균기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제시액		소유자 이 불		관리구분		관계인 이 불	
			수량	지분	동아	대입액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계인 주소	관계인 주소
281 - 6	본천동 신71	관정	1.00 식	750,000	750,000	0	0	750,000 원인원 405-300 인천 남동구 본천동 신71번지 405-300 인천 남동구 본천동 신71번지(14/5)				
281 - 7		옹벽(옹대) 콘크리트	29.00 m	2,175,000	2,320,000	77,500	2,247,500					
281 - 8		바닥 콘크리트	50.00㎡	500,000	500,000	0	0	500,000				
281 - 9		담장 보편	14.40 m	432,000	432,000	30,000	432,000					
281 - 10		장벽대	1.00 식	100,000	100,000	0	0	100,000				
281 - 11		옥천 25년	1.00 주	170,000	180,000	0	0	175,000				
281 - 12		강나무 16년	1.00 주	1	1	1	1	1				
[소계]								34,828,820 원				
418 - 1	본천동 신70-9	교회 보편스레트	81.00㎡	22,680,000	22,680,000	280,000	22,680,000	최저액 405-648 인천 남동구 본천동 415-64 인천 남동구 본천동 415-64 (14/1)				
418 - 2		창고 보편스레트	12.80㎡	1,408,000	1,280,000	105,000	1,344,000					
418 - 3		기복 보편기외	88.00㎡	30,800,000	30,800,000	350,000	30,800,000					
418 - 4		담장 보편	18.00 m	810,000	810,000	45,000	810,000					
418 - 5		바닥 콘크리트	22.50㎡	230,000	230,000	0	230,000					
418 - 6		관정	2.00 식	1,500,000	1,500,000	0	1,500,000					
418 - 7		담문	1.00 식	480,000	500,000	0	480,000					

손실보상 대상물건 및 사업시행지제지역 조서

사업지구: 인천논현(2)
(금액: 원)

페이지: 24 of 24
작성일: 2004.03.03

순번	소재지 지번(영초지번)	물건명, 구조	수량		평가기준별 평가액		사업시행자 제시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지번	면적	종이	대일액	단가	금액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소유자 주소 (상거주지)	관리구분	관계인 주소	
418 - 8	논현동 산70-9	공장 철거물조성비	99.75㎡		4,189,500	4,488,750	43,500	4,339,120 최자석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64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64 (14/1)	인천 남동구 논현동 415-64			
418 - 9		단종나무 10년	2.00주		200,000	210,000	0	205,000					
418 - 10		꽃사과 10년	1.00주				↑	↑					
【소계】					11,889,500	12,220,200	355,000	82,398,120 원					
150 - 1	논현동 산71	기억 적벽돌스케이트	33.97㎡					12,059,350 홍순래	405-300 인천 남동구 논현동 산71 15/5 407-040 인천 개암구 효성동 8-1 대경익스텔 806-202				
150 - 2		기후 복제원석	9.00㎡		540,000	540,000	60,000	540,000					
150 - 3		정교원화장실 목재원석	7.80㎡		900,000	900,000	0	900,000					
150 - 4		관정	1.00식		750,000	750,000	0	750,000					
150 - 5		바닥 콘크리트(3+1.5)	4.50㎡		50,000	50,000	0	50,000					
150 - 6		담장 원석	12.00㎡		240,000	210,000	19,000	228,000					
150 - 7		대문 일대물	1.00식		220,000	200,000	0	210,000					
150 - 8		강나무 5	1.00주		70,000	70,000	0	70,000					
150 - 9		무궁화 5	5.00주				↑	↑					
【소계】								14,807,350 원					
【총계】								1,286,888,200 원					소유자수: 34 명 관계인수: 0 명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200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처리할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1. 분묘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371번지
2. 분묘기수 : 총2기
3. 개장사유 : "서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신속추진
4. 공고기간 : 2004. 3. 22. ~ 2003. 6. 22. (3개월간)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6. 개장후 안치장소(납골당) : 인천광역시부평공설묘지또는기타납골당
7. 신고처 및 문의처
 - 인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64)
 - 인천 남동구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032-453-2384)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재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증등을 구비하여 신고
9. 유의사항 : 연고가 있는 분묘는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시행자가 임의개장
하겠으며 분묘기수 이외의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중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 처리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2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201호

미술장식품심의결과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6번지 이토복합빌딩(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품 심의결과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구월동 1456번지】

심의 일시		2004. 3. 19(금) 14:00		심의장소	남동구청4층 소회의실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56번지			
건 축 주		(주)이토건설			
작품 번호	작 품 명	구분	심의결과	권 고 사 항	
1	Messenger 2004	조각	승인	1. 소재변경 검토(철 ⇒ 알루미늄) 2. 건물내부에 비해 너무 밝은 적색작품임(색상 검토) 3. 명쾌하게 보이도록 유색투명 아크릴 사용 검토	

2004.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202호

가로기 게양 관리의 위탁 재공고

가로기 게양 관리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계획

- 게양시기 : 연간 18회(국경일, 기념일, 민방위의 날 등)
- 가로기 종류 : 4종(태극기, 구기, 시기, 민방위기)
- 게양구간 : 남동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6개노선, 1,760개소(×2), 88km
- 위탁예정액 : 28,854천원

2.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3. 위탁업체 협약방법 : 수의계약

4.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일시 : 재공고일로부터 2004. 3. 27 13:00까지

5. 등록 및 견적서 제출장소 : 남동구청(총무과)

6. 참가업체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계획서

7. 위탁협약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8. 참가업체 자격조건

-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 및 사업자
- 인력 및 시설 장비의 보유
 - 차량(1톤 화물) 3대이상, 인력 6명이상, 가로기 보관장소, 기타 가로기 게양에
필요한 장비

9. 기 타

- 견적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전 「가로기게양위탁관리운영계획」 및 「계약서(안)」 참고

2004년 3월 23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 - 207호

재결신청서열람공고

인천광역시장의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관한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04. 3. 2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
2. 사업의종류와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2차“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
4. 열람기간 : 2004. 3. 24 - 2004. 4. 7
5. 기타사항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가 있으신 분은 도시계획과(032-453-2664)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입찰공고(전자입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208 호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0 공 사 명 : 간석동 271-7번지외 6개소 하수도 정비공사
- 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 0 설계금액(기초금액) : 41,679,000원(부가세포함)
- 0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3월30일(화)오전 09:00 -2004년4월8일(목)오후18:00
- 0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4월 9일(금)오전10: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0 설계서 열람기간 : 2004년3월25일(목) - 2004년4월8일(목) [남동구청 건설과]
- 0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0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입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이며
- 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확약서로 갈음 하고,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사항

- 0 기초금액(41,679,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하고
- 0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 제외

6.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0 본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0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0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54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곳 :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453-2542 담당자 : 박충길)

2004 . 3. 24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남동구 기업출납원

· 입찰공고(전자입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04 - 211 호

1. 입찰에 부치는사항

- 0 공 사 명 : 만수3택지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 0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0 설계금액(기초금액) : 44,726,000원(부가세포함)
- 0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3월31일(수)오전 09:00 -2004년4월8일(목)오후18:00
- 0 입찰진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4월 9일(금)오후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0 설계서 열람기간 : 2004년3월26일(금) - 2004년4월8일(목) [남동구청 건설과]
- 0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0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입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업체 이며
- 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증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소지업체증 준설차량을 소유한 업체(입찰마감일까지 차량등록증 제출)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확약서로 갈음 하고,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사항

- 0 기초금액(44,726,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비가격」으로 결정하고
- 0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 제외

6. 낙찰자 통보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0 본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0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0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 0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건설과 건설행정팀(032-453-254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곳 : 남동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453-2542 담당자 : 박충길)

2004 . 3. 25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남동구 기업출납원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213호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소래포구 조형물(아립빌보드)설치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111-283번지 소래대교 입구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공사개요 :
- 규격 : 18,110mm(H)×10,800mm(W)×5,300mm(D)
- 빌보드(파나플렉스)설치 1식
마. 설계금액 : ₩124,349,430원(추정가격113,044,937원, 부가세11,304,493원)
바.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두고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철물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04. 3. 31(수) 09:00~2004. 4. 6(화) 14:00

나.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4. 3.31(수) ~2004. 4. 6(화) [도시정비과]

다. 입찰서는 반드시 정부전자조달(G2B)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정부전자조달(G2B)전자입찰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04. 4. 6(화) 15:00

나. 개찰장소 : 인천광역시남동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2004. 2. 6)]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2004. 2. 6)] 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자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집행후 낙찰하한가격 /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적격심사후 지체없이 결정 통보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136호의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2000,2001,2002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기초금액(124,349,43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을 작성하며

나.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5호, 제136호),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032-453-221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홈페이지(<http://namdong.go.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3월 26일

인천광역시남동구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4 - 214 호

2004년도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3. 26 .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실시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미연방지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실시지역 : 남동구 전지역

☐ 실시기간 : 2004. 3. 29. ~ 4. 30. (33일간)

☐ 질병의 종류 및 대상가축

- 소 : 탄저·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 돼지 : 일본뇌염, 콜레라
- 개 : 광견병
- 닭 : 뉴캐슬병

□ 시술자 : 관내 공개업수의사 14명

상 호	소 재 지	연락처	대표수의사	비 고
덕수동물병원	구월1동 1205-2	467-8575	고종길	구월동
보람동물병원	구월3동 1394-9	429-1673	문우상	
자연동물병원	구월4동 1264-75	468-6406	유재현	
희망동물병원	간석1동 283-5	421-7755	이광호	
연세동물병원	간석1동 749-8	427-9372	여성진	
강아지와고양이나라	간석1동 908 덕산상가	426-3578	아쿠아플러스(주)	
효성동물병원	간석3동 39-13	423-6616	이광중	
도그인동물병원	간석3동 914	433-3440	유용욱	
세우리동물병원	간석3동 921-15	463-9066	이행숙	
엘지동물병원	간석4동 216-4	423-1289	박경환	
D&C동물병원	간석4동 573-1 성우네오빌	437-7525	김완철	
신진동물병원	만수1동 961-31	463-8801	황의담	만수동
서울대동물종합병원	만수2동 102-8	466-8670	하태홍	
젼마동물병원	만수5동 882-2	464-4488	송재근	
신세계동물병원	만수5동 898-7	468-7533	최선화	
행복한종합동물병원	만수5동 916-2	469-7588	성환규	
만수동물병원	만수6동 1025-15	467-8450	류태권	
해맑은동물병원	만수6동 1079-3	469-8275	박철병	

□ 기타 특이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으로 내방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백신 부족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217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시송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여 소재지불명(이사등)으로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2.행정 처분일:2004.03.16

행정처분 공시송달대상자				위반내용	처분내용	비고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등록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상담다이아테크(주)	실내건축 강남99-01-5	정경호	고잔동705-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주)덕성건설	철콘 인천남동00-10-15	유재준	만수6동1040경방프 라자601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주)이정토건	토공 인천99-02-49 철콘 인천96-10-17 상하수도 인천96-13-3	김정선	구월동1164-7삼우빌 딩401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주)시계건설	시설물 인천남동99-30-6	조규봉	만수동977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한국수도(주)	상하수도 서울89-13-34	김병욱	만수동912-1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지원토건(주)	토공 인천99-02-49 철콘 인천98-10-15	정길원	만수동1072-7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나산산업개발(주)	토공 마포98-02-22 철콘 마포98-10-16	백남중	만수동1072-7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두양건설(주)	토공 인천92-02-20 상하수도 인천99-13-30	황영근	만수동980-6,201호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주)한빛개발	토공 인천98-02-38	남종호	구월동1166-3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신흥건설(주)	철근 인천92-10-22	노승진	구월동1124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항2호의거최근2 년간실적미달	영업정지(2월) 2004.03.16~ 2004.05.16	
---------	------------------	-----	---------	------------------------------------	---------------------------------------	--

3.행정처분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최근2년간 실적미달

4.유의사항

-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남동구청 건설과☎032-453-25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03. 26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남동구보건소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 제2004 - 4호

한방의약품구매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방의약품구매

나. 구입 품명,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품 명	규 격	수 량	비고
오 적 산	43.4g/일	15,000일	정우 또는 광동	청상건통탕	42.8g/일	1,400일	정우 또는 광동
보중익기탕	20.5g/일	700일		항사평위산	29g/일	4,000일	
구미강활탕	43.9g/일	1,000일		한방습포제 (발착포 포함)	6매/봉	10,000봉	

2. 입찰방법 : 최저가 총액 전자 제한 경쟁 입찰

3. 입찰등록마감일시 : 2004. 4. 10(토) 13:00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04. 4. 12(월) 10:00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입찰집행관PC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약사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득하고, 우수약품 유통관리기준(KGSP)제도에 의한 적격업소로 지정된 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6. 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지역제한 : 인천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7. 입찰참가신청서류

가. 전자입찰서를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입찰보증금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귀속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최저가로 낙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추천에 의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통보 : 입찰일시 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납품일시 및 조건

- 가. 납품기한 : 당 보건소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나. 납품장소 : 당 보건소
- 다.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요청일로부터 1년 이상

13. 기타사항

-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유의서,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추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우리보건소 한방의약품구매 기초금액은 삼천팔백구십팔만오천삼백원(₩38,985,300.-)입니다.
-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보건소 보건행정팀(☎032-453-27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 3.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경리관

